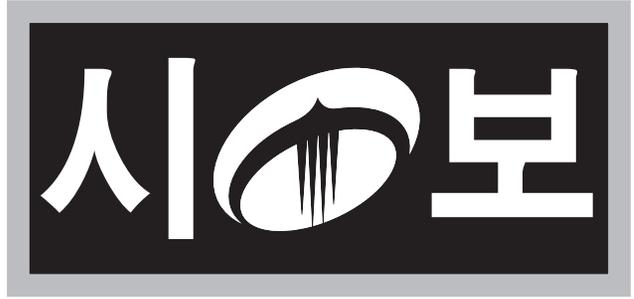


포 향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759호 2009. 12. 15(화)

선	기 관 의 장
람	

포 향 시

- 시장지시사항..... 2
- ◀ 조 려 ▶
-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제967호) 3
- 포항시 포항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68호) 4
-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69호) 5
-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70호) 30
-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제971호) 40
- ◀ 규 칙 ▶
-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제528호) 43
- ◀ 고 시 ▶
-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제2009-109호) 45
- ◀ 공 고 ▶
- 어업면허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 공고(제2009-1280호) 46
- 어업면허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 공고(제2009-1281호) 47
- 어업면허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 공고(제2009-1282호) 48

회									
람									

시장 지시(훈시)사항

- 2009. 12. 14(월) 간부회의 -

관 리 번 호	지 시 내 용	주관부서
훈 시 (12.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무식과 시무식 행사를 의미있게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무식은 1년의 성과를 결산하는 장소로 부서장이 성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 시무식은 사업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시정홍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 2010년도 예산 조기집행 준비철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년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고 친서민 정책의 일자리만들기를 적극 추진하여 예산의 조기집행과 사업 조기발주 준비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 한민족해맞이 축제 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람. ○ 업무추진시 철저하게 선거법을 준수하여 추진 ○ 공직자 청렴도 제고에 관심을 두고 떨어진 행정신뢰를 회복 할 수 있기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 (자치행정과)</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 (기획예산과) (재정관리과)</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부 서</p>
'09-16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허가 행정절차 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인허가 업무에서 관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행정절차의 무시 등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생되어 행정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 - 평소 전문소양을 높이고 정확한 법 적용과 절차 준수 등 적법한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기 바람. - 위법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감사담당관</p>
'09-1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동아리 활성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아리 조직을 활성화하여 읍면동에서 소규모 시정 연구팀이 구성되어 활동할 수 있기 바람. - 시정개선 등 연구된 안건이 건의될 수 있는 시스템을 조성하고 시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전략경영팀</p>
'09-1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연시 불우시설 자원봉사자 활동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느 해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복지시설에 많은 자원봉사자가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연말연시 불우시설에 대한 자원봉사자 활동이 활발하게 실시되어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이끌어 낼 수 있기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새마을봉사과 (사회복지과)</p>
'09-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학사거리 교통혼잡 확인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학 사거리의 영덕방면에서 양학동 방면으로 좌회전을 허용한 이후 차량정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 교통체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교통혼잡 원인을 찾아 내고 시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교통행정과</p>

조 례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2월 15일

포항시 조례 제 967 호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잔여금 및 채납액은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운영한다.

1. 폐지이유
 포항시 농공단지 조성 목적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재정·회계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를 폐지 하고 미사용액 및 채납분에 대하여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포항시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폐지
 (조례 제0066호, 1995.01.12)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포항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12월 15일

포항시 조례 제 968 호

포항시 포항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포항구룡포 과메기산업특구 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농수축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를 “농수산물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p> <p>① (생 략)</p> <p>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대상 시설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축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p> <p>2.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2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1. ----- ----- 농수산물물의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축산물의 처리는 「축산물 가공처리법」 제22조 농립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도 별도의 특례조항이 없는 바,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제2조제1항제1호)

- “농수축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를 “농수산물의 간이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로 함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2월 15일

포항시 조례 제 969 호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 법 제13조 및 규칙 제9조의 규정에 ” 를 “법 제14조 및 규칙 제15조에” 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1월” 을 “1개월”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의1과”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와” 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다만,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제외한다.” 를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 제22조제1항제1호의 연탄재는 제외한다.” 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의” 로 한다.

제6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각 종류별 배출장소, 배출방법 등은 별표 11과 같다.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효율적인 수집과 보관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관용기를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영 제6조 및 규칙 별표 4의 규정에” 를 “영 제7조 및 규칙 별표 5에” 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를 “법 제14조제2항에” 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기준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용이한 해당 토지 및 건물 내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별표 1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1.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② 제1항에 의한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하며, 신고 미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항” 을 “제2항” 으로 하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7조에 따라” 로 하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18조에 따라” 로 한다.

제12조 “제2항” 을 “제3항” 으로 하고,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로 하며, “법 제25조제1항” 을 “법 제18조제1항” 으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을 “제16조제1항에 따라” 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9조제2호 중 “「도시공원법」” 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을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을 “재활용폐기물 및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는” 으로 하고, 제3호 중 “사업장 폐기물” 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로, 제4호 중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각호의 1” 을 “각 호의 어느 하나” 로 하고, 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법 제63조” 를 “법 제68조”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7조, 제15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를 “법 제8조, 제15조 및 제17조를” 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7조의 규정” 을 “법 제8조를” 로 하고,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31조 본문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법 제43조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9조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로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로 하고, 제2호 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5조제1항의 규정에”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1항에”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를 “법 제62조제2항에”로 하고, “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제34조 본문 중 “포항시사무위임조례”를 “「포항시 사무위임 조례」”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 제2호1목 중 “법 제7조”를 “법 제8조”로 하고, 같은 목 바 중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동법 제44조의2”를 “같은 법 제46조”로 하며, 제2목 중 “법 제7조”를 “법 제8조”로 한다.

별표 1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	품 목	배 출 요 령
1. 종이류	- 신문지	- 물기에 젖지 않게 함 - 반듯하게 편 후 차곡차곡 쌓아 끈으로 묶어 배출 - 비닐 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 비닐코팅표지, 공책, 달력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 종이컵,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 상자류 (과자포장상자, 골판지상자 등)	- 비닐코팅 부분 제거 - 상자에 붙은 테이프, 철판 제거 후 압착하여 묶어 배출
2. 캔 류	- 철캔, 알루미늄캔 (음·식용류)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군 후 가능하면 압착 -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서 배출
	- 기타 캔(부탄가스, 에어졸, 살충제 용기)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3. 병 류	- 음료수병, 주류병, 기타 병	- 병뚜껑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배출 - 담배꽂초 등 이물질질을 넣지 말 것 ※ 병병보증금제도에 의거 마트 등 소매업자에게 반환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음
	<삭제>	<삭제>
4. 고철류	- 고철(공기구, 철사, 못, 철판 등 쇠붙이)	- 목재, 플라스틱, 고무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비철금속(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샷시류)	- 목재, 플라스틱, 고무 등 이물질질을 제거하고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페인트통	- 물에 씻어 페인트 제거 후 배출
5. 플라스틱류	- PET(음료수, 간장, 술병)	-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행구어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 HDPE(물통, 삼푸, 세제용기) - LDPE(우유병, 막걸리병) - PP(상자류, 쓰레기통) - PS (요구르트병)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질을 제거한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 <삭제>
	- 합성수지용기류 - 플라스틱 받침접시 ※ 분리배출표시가 있는 용기에 한정	- 가능한 압착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6. 스티로폼	- 가전제품 포장용	- 가전제품의 완충제로 사용한 스티로폼은 판매업자에게 배출
	- 농수산물 상자	- 이물질이나 물기제거 후 끈으로 묶거나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 컵라면용기	- 뚜껑은 제거하고 반드시 물에 세척(이물질이 묻거나 타 재질로 코팅된 스티로폼은 제외)하여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7. 필름포장재	- 1회용 비닐봉투	- <삭제> - 음식물류 담은 봉투는 제외(세척 후 물기 제거 시 가능)
	- 라면, 빵, 과자봉지, 한약봉지, 세제류포장재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 제거 후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
8. 의류	- 옷(면섬유류, 기타 의류)	- 차곡차곡 접어 묶어 배출(젖은 옷은 말린 후 배출) - 한복, 담요, 베게, 카펫, 나일론 제외
9. 영농폐기물	- 페비닐 - 농약유리병 - 농약플라스틱병 - 농약봉지	- 흙 등 이물질을 제거하고 내용물을 비운후 차량진입이 가능한 집하장에 배출 후 한국환경자원공사로 수거요청
10. 폐형광등	- 직관형램프 - 원형램프 - 안전기내장형램프 - 콤팩트형램프	- 외피, 부속품 등은 제거한 후 공동주택, 관공서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 대형건물, 다량배출업소(간판, 조명업체 등)는 자가처리
11. 폐건전지	- 알카리망간전지 - 망간전지 -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등	- 공동주택, 관공서, 학교, 대형건물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배출

【별표 5】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부 과 대 상	부과단위	시 처리시설 반입수수료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킬로그램당	30원
○ 공사장생활폐기물		
- 유기성 폐기물		50원
- 유리, 페콘크리트, 금속편류, 폐석고, 토사류 및 이와 성상이나 비중이 유사한 물질		35원
- 페스티로폼, 압면, 유리섬유 및 이와 성상이나 비중이 유사한 물질	킬로그램당	500원
- 목재류, 페프라스틱류, 비닐류 및 이와 성상이나 비중이 유사한 물질		50원
- 혼합폐기물		70원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일 경우에는 각 위반 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 나.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한다.
- 다.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 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진행중인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이를 승계한다.

2. 부과항목별 과태료 부과 기준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천 원)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이후)
1.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가. 별도기구 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꽂초, 휴지 등)을 버리는 행위	30	30	30
나.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 보자기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100	100	200
다.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	100	200
라. 토지·건물 안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 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100	100	200
마. 차량, 손수레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200	300	500
바.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축폐재료 등)을 버리는 행위(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 및 같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사업장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를 제외한다)	500	700	1,000
2.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법 제8조제3항)	300	700	1,000

【별표 11】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제6조 관련)

종 류	배출장소	배출방법	유의사항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 	중량제봉투에 넣은 후 상단을 묶어 배출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하여 별도 분리배출
재활용가능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넣어 배출하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는 봉투 사용
대형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영업장 : 문전배출 ■ 공동주택 : 지정장소 	대형폐기물스티커 부착 후 배출	전자제품 신품 구입시 포장재 와 폐전자제품은 판매자가 회 수
공사장생활 폐기물	시 처리시설로 자가 입고	읍면동에서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필증을 발부 받은 후 자가 입고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최대한 선별하여 별도 분리배출
음식물류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영업장,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문전배출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지정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독주택, 공동주택 (20세대 미만) : 규격용기(5리터)에 매월 납부필증 부착 후 문전배출 ■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 규격용기(120리터)에 수시배출 ■ 기타 (음식점 등 영업장) : 중량제봉투에 넣어 문전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배출 ■ 중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할 경우는 봉투를 임의용기에 담아 배출

【별표 12】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제11조의2 관련)

1.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60세대 당 66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 조 :

- (1) 자동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것.
- (2) 용기 바닥에는 이동 및 고정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 (3)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2. 음식물류폐기물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30세대 당 120리터 용기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단, 2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구 조 :

- (1) 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 (3)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다. 재 질 :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3. 폐형광등·폐건전지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100세대 당 1개 이상을 각각 설치하여야 하며, 폐건전지 보관용기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동출입구(통로)당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나. 구 조 :

- (1) 폐형광등 보관용기 : 40W 직관형형광등 30개 이상을 보관할 수 있는 크기이어야 하며, 운반용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 (2) 폐건전지 보관용기 : 외부에 설치할 경우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제외)

4.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

가. 설치기준 : 100세대 당 1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1조는 종이류, 캔(고철)류, 플라스틱류, 유리병류, 비닐(필름)류, 등 5종 이상의 수집함을 말한다.

나. 구 조 :

- (1) 용기 바닥에는 이동이 가능한 바퀴를 부착할 것.
- (2) 빗물 투입과 악취발산 방지를 위한 뚜껑을 부착할 것.
- (3) 용기 상단에는 운반용 손잡이를 부착할 것.

다. 재 질 : 부식 및 파손이 잘 되지 않는 금속 재질 또는 내구성 및 내열성이 강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 재질(FRP 제외)

라. 색 상 :

품 목	색 상	적용사례				
		전체적용	뚜껑적용	라벨적용	뚜껑,라벨, 모형 적용	걸이형 레이블 적용
캔류	 회색					
유리병	 주황색					
종이팩	 녹색					
PET병	 노랑색					
플라스틱류	 파랑색					
비닐(필름)류	 보라색					

※ 분리수거 용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품목별 그림 또는 모형 등을 용기에 표시하고, 수거용기 또는 설치장소에 품목별 분리배출요령 안내문 부착

5. 기 타 : 대형건물과 같이 세대수를 설치기준으로 정할 수 없는 시설물은 시설물의 규모와 배출량을 감안하여 일반쓰레기, 폐형광등, 폐건전지 보관용기는 각각 1개 이상, 재활용가능폐기물 보관용기는 1조 이상을 설치 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업종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대행신청내용	폐기물의종류			
	대행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대행신청지역			
시설및장비보유현황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쓰레기봉투 판매소 지정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판매업소 소재지 현황

소 재 지	대 표 자	상 호 명	업 종 형 태	비 고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6조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 판매소 준수사항(「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7조)

1. 용도 및 규격별로 충분한 물량 확보
2. 규정요금 준수
3. 위조 또는 유사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4. 쓰레기 봉투의 현금 교환
5. 기타 행정지시 사항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포항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8조에 의하여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갑)

(부과기관 보관용)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 . .	의견제출 기 간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 년 월 일		단속공무원 확인			

※ 특기사항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표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을)		(부과 대상자 통지용)					
과태료 부과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반일시	위반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 . .	의견제출 기 간	. . .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생 년 월 일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오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제출 기간까지 부과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부과의 효력은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부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포 항 시 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재활용품)]

- 표중 발행번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 2, 3번 밑줄친 부분은 피부과자가 명백히 알 수 있도록 굵은 글씨체로 인쇄

(병)	(수납은행 보관용)
-----	------------

과 태 료 납 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포 함 시 장 (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표중 발행번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정) (개인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일부인

취급자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무)	(시 통보용)
-----	---------

과 태 료 납 부 영 수 필 통 지 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성 명		주 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년 월 일까지	납부장소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포 항 시 장 귀 하

수납일부인

210mm×297mm [일반용지60g/m²(재활용품)]

○ 표중 발행번호, 회계연도, 세입과목, 계좌번호,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 인쇄

【별지 제7호서식】

제 호	과 태 료 납 부 독 촉 장
-----	------------------------

납 부 의 무 자	① 성 명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④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태료금액		⑦ 당초납부기한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포 향 시 장 (인)

【별지 제9호서식】

과 태 료 부 과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주 소			
과 태 료 부과내역	부과기간(납부기간)		납부통지서번호	
	고 지 받 은 일 자		과 태 료 금 액	
	과 태 료 부 과 사 유			
과 태 료 부 과 에 대 한 불복사유				

법(법률)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제 호 :

수 신 : 발 신 : 포 항 시 장 (인)

제 목 : 과태료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법(법률) 제 조와 관련됩니다.
2. 법(법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부과를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기가 있으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태 료 부 과 에 대 한 이 의 제 기 자	① 성 명	(한자)	② 생 년 월 일	
	③ 주 소			
과 태 료 부 과 내 역	④ 고 지 일 자		⑥ 과 태 료 금 액	
	⑤ 부 과 기 관		⑦ 이 의 제 기 일 자	

※ 붙 임

1. 과태료 부과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현 행	개 정
<p>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①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영 제6조 및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또는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 ④ (생략)</p> <p><신 설></p> <p>제12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 (신 설)</p> <p>①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최종처리 시설을 사용 하지 못하며,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처리 또는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폐기물의 종류, 처리 시설의 용량, 사용기간</p>	<p>제8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①----- ----- 영 제7조 및 규칙 별표5에----- -----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 법 제14제2항에----- -----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1조의2(생활폐기물 보관용기의 설치 기준 및 관리) ① 법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시행자,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청소차 진입이 용이한 해당 토지 및 건물내에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별표 12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제16조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 대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형건물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p>② 제1항에 의한 보관용기 설치·관리자는 용기내부 및 외부 청소를 실시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설치된 용기의 분실·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대체 등의 관리책임을 진다.</p> <p>제12조(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대한 조치)</p> <p>①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 미대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제6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② 법 제17조에 따라----- ----- ----- 법 제18조에 따라----- ----- -----</p>

현 행	개 정
<p>을 고려하여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p> <p>②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에 의하여 배출하거나, 스스로 처리 또는 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처리 할 수 있다.</p> <p>제18조(판매소의 지정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19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또는 출입구 주변의 상점등을 대상으로 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생략) 2. 공원(「도시공원법」 또는 「자연공원법」 상의 공원을 포함한다) 3. (생략)</p> <p>제2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입·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p> <p>1.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p> <p>2. (생략) 3. 사업장폐기물 및 공시장생활폐기물의 시 처리 시설 반입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p> <p>② (생략)</p> <p>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일반용 봉투의 무료제공 등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 2. ~ 4. (생략)</p>	<p>----- -----</p> <p>③ ----- -제6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 -----법 제18조 제1항----- -----</p> <p>제18조(판매소의 지정해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제16조제1항에 따라 ----- -----</p> <p>1. ~ 3. (현행과 같음)</p> <p>제19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 -----</p> <p>1. (현행과 같음) 2.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p> <p>3. (현행과 같음)</p> <p>제2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 ----- -----</p> <p>1. 재활용폐기물 및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에서 발생하는 연탄재는 ----- ----- 2. (현행과 같음) 3. 사업장생활계폐기물----- -----</p> <p>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4조(수수료의 감면)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 -----</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 4.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p>제3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u>법 제58조제2항의 규정</u>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 사항은 <u>포항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u>의 규정에 의한다.</p> <p>② (생략)</p> <p>제3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은 <u>포항시사무위임조례</u>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33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u>법 제62조제2항에</u>----- ----- <u>「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u>-----.</p> <p>② (생략)</p> <p>제34조(권한의 위임) ----- <u>「포항시 사무위임 조례」</u>----- -----</p>

1. 개정이유

- 가. 대형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중 대부분이 종량제봉투를 사용 하지 않고 수거운반 대행업체를 통하여 위탁 처리됨에 따라,
- 나.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저조함은 물론, 폐기물 감량정책에도 역행하고 있으나 이를 규제할 법적근거가 미비하여 행정지도의 한계가 있으므로,
- 다. 위탁처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처리수수료 인상 및 공동주택과 대형건물의 분리수거함 설치를 의무화 하는 등 폐기물의 배출자 부담원칙을 강화하여 생활폐기물의 무분별한 매립장 반입을 억제하고 매립장 수명을 연장코자 함.

2. 주요내용

- 생활폐기물 각 종류별 구체적 처리방법 명문화 (안 제6조 제7항, 별표 11)
-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기준 마련 (안 제11조의2, 별표12)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명문화 (안 제12조제1항)
- 사업 활동으로 다량 배출되는 연탄재의 종량제봉투 사용 규정 마련(안 제22조제1항제1호)
- 재활용가능폐기물 품목추가 및 배출요령 조정 (안 별표4)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 조정(안 별표5)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 20,000원/톤 → 30,000원/톤
 - 공사장생활폐기물(유리, 폐콘크리트 등) : 25,000원/톤 → 35,000원/톤
 - 공사장생활폐기물(혼합폐기물) : 50,000원/톤 → 70,000원/톤
 - 사업장폐기물(구 산업폐기물) : 수수료조항 삭제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2월 15일

포항시 조례 제 970 호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7인이내의” 를 “7명 이내의” 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곱미터당 1만원의 비율 또는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 중 적은 금액으로 예치토록 한다. 다만, 공장은 제외한다.

제11조제3항 중 “영 제15조제5항제12호의 규정에서” 를 “영 제15조제5항 제14호에서” 로 한다.

제11조제3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공장건축물 옥상에 임시사무실, 임시창고,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을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 허용

제12조제1항 중 “각호의 1과” 를 “각 호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6월이하” 를 “6개월 이하” 로,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6월이상의” 를 “6개월 이상의” 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각호의 1에서”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연임할 수 있다” 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생산농지지역 또는 보전농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한시설·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공공용시설은 제외한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제1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관광지, 골프장 등 기존에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제17조제1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8조 본문 중 “3이상의” 를 “셋 이상의” 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각호의 1에서” 를 “각 호에서” 로 한다.

제2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맞벽건축물의 수는 인접하는 둘 이상의 건축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에 한 한다.

제26조제1항 중 “2이상의” 를 “둘 이상의” 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각호의 1에서” 를 “각 호에서” 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각호의 1과” 를 “각 호와” 로 한다.

제2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성 이벤트를 열거나 관측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 단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9월 개정일 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34조제1항 중 “약간 인” 을 “약간 명” 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중 “각 1인” 을 “각 1명” 으로 한다.

제39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		허가번호(년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	
신 청 인	※ 해당 항목에 √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건축주 <input type="checkbox"/> 설계자 <input type="checkbox"/> 시공자 <input type="checkbox"/> 공사감리자		
건 축 주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	
설 계 자 (공사감리자)	성 명		면 허 번 호
	사무소 명	등 록 번 호	
	주 소	(전화번호 :)	
시 공 자	성 명		면 허 번 호
	회 사 명	(전화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도시미관이나 주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포항시 건축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210mm × 297mm(백상지 80g/m²)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p> <p>①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 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u>당해</u>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p> <p>4 ~ 5 (생 략)</p> <p>② (생 략)</p> <p>제5조(설치 및 기능) ①~② (생 략)</p> <p>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시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시 지적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 4 (생 략)</p> <p>④ (생 략)</p> <p>제6조(구성) ① ~ ③ (생 략)</p> <p>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u> 임할 수 있다.</p> <p>⑤ (생 략)</p> <p>제8조(소위원회) ① (생 략)</p> <p>1.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u>7인</u>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의원 2명 이상을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p> <p>2. (생 략)</p> <p>② ~ ④ (생 략)</p> <p>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곱미터당 1만원의 비율로 예치토록 한다. 다만, 공장</p>	<p>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p> <p>① ----- -----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 ----- <u>해당</u> ----- -----</p> <p>4 ~ 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설치 및 기능)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 ----- <u>각 호의 어느 하나</u>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p>제6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1회에 한하여</u> 연임할 수 있다.</p> <p>⑤ (현행과 같음)</p> <p>제8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1. ----- -- <u>7명 이내의</u> ----- -----</p> <p>2.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0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①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10조의2,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대상건축물은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제곱미터당 1만원의 비율 또는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p>

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 (생 략)

1 ~ 3 (생 략)

4.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공공용시설은 제외한다)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생 략)

1 ~ 7 (생 략)

<신 설>

제1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행로는 시장 또는 건축허가 조사업무 대행자의 확인이 있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 2 (생 략)

제1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녹지지역 및 방화지구를 제외한다)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면적이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 제1항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이어야 한다.

1 ~ 5 (생 략)

제25조(맞벽건축) (생 략)

1. (생 략)

2. 맞벽건축물의 동수는 인접하는 2개동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에 한 한다.

제26조(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제15조(대지안의 조경)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생산녹지지역 또는 보전녹지지역 안의 건축물(학교·공항시설·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공공용시설은 제외한다)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②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관광지, 골프장 등 기준에 조경시 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제17조(도로의 지정) -----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1 ~ 2 (현행과 같음)

제18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
----- 셋 이상의 -----

제2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

----- 각 호에서 -----

1 ~ 5 (현행과 같음)

제25조(맞벽건축)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맞벽건축물의 수는 인접하는 둘 이상의 건축물로 하며 층수는 5층 이하에 한 한다.

제26조(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법 제60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가 2이상의 도로, 공원, 광장, 하천, 바다 등(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에 접한 경우 높이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전면도로의 너비는 가장 넓은 도로(가장 넓은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1 ~ 3 (생략)
② ~ ③ (생략)

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생략)

②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비율이상으로 한다.
1 ~ 3 (생략)
③ (생략)
④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 2 (생략)
<신설>

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 2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철도·하천·광장·공공공지·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 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제34조(전문위원) ① 각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 또는 연구를 위하여 각 위원회에 전문위원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35조(간사 및 서기) 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

①-----
- 둘 이상의 -----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현행과 같음)

② -----

-----각 호에서 -----

1 ~ 3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
-----각 호와 -----
1 ~ 2 (현행과 같음)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의하여 공개 공지 등에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성 이벤트를 열거나 판촉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의2(대지안의 공지) -----

다만, 별표 3의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에 해당 하는 건축물 중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를 하고 2009년 9월 개정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 신고를 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2분의1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제34조(전문위원) ① -----
-----약간 명을 -----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간사 및 서기) ① -----

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건축과내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② (생략)

제39조(위원회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각 위원회의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 5 (생략)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		허가번호(년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	
신청인	※ 해당 항목에 ㄱ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건축주 <input type="checkbox"/> 설계자 <input type="checkbox"/> 시공자 <input type="checkbox"/> 공사감리자		
건축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공사감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도시미관이나 주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포항시 건축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 × 297mm(백상지 80g/㎡)

-----각 1명-----

② (현행과 같음)

제39조(위원회 해촉)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5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적용의 완화 요청서		허가번호(년도 - 구분 - 허가일련번호) □□□□ - □□□□ - □□□□□□	
신청인	※ 해당 항목에 ㄱ를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건축주 <input type="checkbox"/> 설계자 <input type="checkbox"/> 시공자 <input type="checkbox"/> 공사감리자		
건축주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설계자 (공사감리자)	성명		면허번호
	사무소명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시공자	성명		
	회사명		면허번호
	주소	(전화번호 :)	
완화 받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완화 받고자 하는 규정			
완화 받고자 하는 사유			
완화 적용시 공공의 이익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도시미관이나 주변 및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건축법」 제5조제1항 및 「포항시 건축 조례」 제3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적용의 완화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210mm × 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서

	사무소명		면허번호	계 호
신청인	성 명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사 무 소 소 재 지	(사무실 전화 :) (F A X :)		
	주 소	(자택전화 :)		

대상지역

※ 해당 지역에 √를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 북구

「포항시 건축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업무 대행건축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

업무대행건축사 등록신청서

	사무소명		면허번호	계 호
신청인	성 명		등록구분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법인
	사 무 소 소 재 지	(사무실 전화 :) (F A X :)		
	주 소	(자택전화 :)		

대상지역

※ 해당 지역에 √를 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남구 북구

「포항시 건축 조례」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업무 대행건축사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1. 개정이유

2009.03.27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 를 도입·추진

2. 주요내용

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에치금 완화 (안 제10조의2제1항)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중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의 범위 또는 제곱미터당 1만원의 비율 중 적은금액으로 안전관리 예치금을 완화

나. 가설건축물 축조제한 유예 (안 제11조제3항)

- 공장건축물의 옥상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한시적으로 허용 (2009.9.개정일~2011.6.30까지 축조 신고하는 경우에 한함)

다.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 완화 (안 제15조제1항)

- 면적 200㎡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물 조경면적 기준완화
 - 관광지, 골프장 등 기준에 조정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 적용 제외

라.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안 제28조제5항)

-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성 이벤트를 허용

마. 대지안의 공지확보 의무 완화 (안 제28조의2)

- 공장 또는 물류시설 건축 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한시적 1/2로 완화 (2009.9.개정일~2011.6.30까지 착공신고 하는 경우에 한함)

포항시의회에서 의결된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12월 15일

포항시 조례 제 971 호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포항시 여성문화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공휴일과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 을 “공휴일과 야간” 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7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제12조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하고 제4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5.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제13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를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담당주사가” 를 “여성문화회관장이” 로 한다.

제16조 본문 중 “각호의 1의”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19조 본문 중 “각호의 1에” 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3조(사용자의 범위) (생략) 1. (생략)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사용자의 범위)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제5조(사용료등의 징수) ① (생략) 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③ (생략)	제5조(사용료등의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공휴일과 야간-----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사용료등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수강료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사용료등의 면제)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기타 사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

현 행	개 정
<p>제8조(사용료등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u>각호의 1</u>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12조(기능) (생략)</p> <p>1. ~ 3. (생략) (신설) (신설)</p> <p>4. 기타 <u>회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u></p> <p>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하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p>1. ~ 3. (생략)</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u>교육담당주사가 된다.</u></p> <p>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u>각호의 1</u>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4. <u>기타</u> 위원이 품위손상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p> <p>제19조(교육강사 등의 해촉) 시장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자가 다음 <u>각호의 1</u>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8조(사용료등의 반환) ----- ----- - <u>각 호의 어느 하나에</u> ----- -----</p> <p>1. ~ 4. (현행과 같음)</p> <p>제12조(기능)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u></p> <p>5. <u>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전반적 사항</u></p> <p>6. <u>그 밖에</u>-----</p> <p>제13조(구성) ①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 -----</p> <p>② <u>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u>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 <u>여성문화회 관장이</u> --</p> <p>제16조(위원의 해촉) ----- <u>각 호의 어느 하나</u>의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 -----</p> <p>제19조(교육강사 등의 해촉) ----- ----- <u>각 호의 어느 하나</u>에 -- -----</p> <p>1. ~ 3. (현행과 같음)</p>

1. 개정이유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영자문위원회의 기능 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전반적 사항의 자문기능을 추가함(안 제12조)

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여성문화회관장으로 함(안 제13조)

규 칙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2월 15일

포항시 규칙 제 528 호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 규칙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의2(당직수당 지급) 당직수당 지급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지급 할 수 있다.

- 1. 일직 : 50,000원
- 2. 숙직 : 50,000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6조2(당직수당 지급)</u> 당직수당 지급 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과 시간 종료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10px;"> <thead> <tr> <th style="width: 30%;">당직구분</th> <th style="width: 30%;">지급액</th> <th style="width: 4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본청·사업소·구청의 일·숙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40,000원</td> <td></td> </tr> <tr> <td>읍면의 일·숙직</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00원</td> <td></td> </tr> </tbody> </table>	당직구분	지급액	비 고	본청·사업소·구청의 일·숙직	40,000원		읍면의 일·숙직	50,000원		<p><u>제6조2(당직수당 지급)</u> 당직수당 지급 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계속하여 사무실에서 3시간 이상 대기근무한 재택근무자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지급할 수 있다</p> <p>1. <u>일직 : 50,000원</u></p> <p>2. <u>숙직 : 50,000원</u></p>
당직구분	지급액	비 고								
본청·사업소·구청의 일·숙직	40,000원									
읍면의 일·숙직	50,000원									

1. **개정이유**
본청·사업소·구청, 읍·면간의 당직비 수당조정으로 당직근무의 형평성을 기하고 함.

2. **주요내용**

- 본청·사업소·구청, 읍·면의 당직비를 50,000원으로 균등조정
- * 당직비 지급현황

당 직 구 분	현 행	변 경
본청·사업소·구청의 일·숙직	40,000원	50,000원
읍·면의 일·숙직	50,000원	50,000원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09 - 109호

포항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포항 도시계획시설(학교:포항대학)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변경)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 12. . .

-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산55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학교)
 - 명칭 : 포항대학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소 :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산55번지
 - 성명 : 학교법인 동지학원 이사장 하영환
- 4. 사업계획 내용

사업명	위치	면적(㎡)	시설의 구분	면적			비고
				기정	변경	증감	
포항대학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산55번지 일원	326,651	계	326,651	326,651	-	
			건축부지	145,418	152,076	증6,658	
			운동장부지	28,482	28,482	-	
			도로부지	34,391	35,404	증1,013	
			조경부지	118,360	110,689	감7,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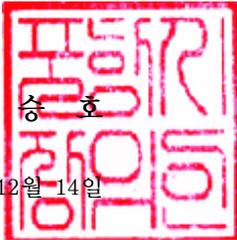
-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83. 12. 8 ~ 2010. 12. 30
 -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 변경사항 없음
 - 6.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변경사항 없음
- ※ 관계 편입토지조서, 도면등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포항시청 도시계획과(☎054-270-34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 고

포항시 공고 제 2009-1280호

수산업법시행령 제3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 항 시 장 박 승 호



2009년 12월 14일

○ 공고사항

면허번호		포 항 제 72 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어류 등 양 식 어 업
어업권자	주 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226번지
	성 명	최 진
	주민등록번호	610206-*****
어업면허기간		2002. 11. 7. ~ 2012. 11. 6.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권 포기 (2.0ha)
처분 년 월 일		2009. 12. 14.
면허번호		포 항 제 148 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복 합 양 식 어 업
어업권자	주 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226번지
	성 명	최 진
	주민등록번호	610206-*****
어업면허 기간		2009. 12. 14. ~ 2012. 11. 6.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면허 (2.0ha)
처분 년 월 일		2009. 12. 14.

포항시 공고 제 2009-1281호

수산업법시행령 제3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



2009년 12월 14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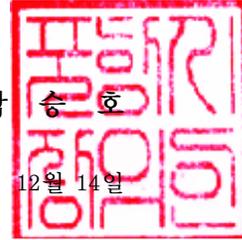
○ 공고사항

면허번호		포항제 75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어류 등 양식 어업
어업권자	주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226번지
	성명	최진
	주민등록번호	610206-*****
어업면허기간		2003. 9. 24. ~ 2013. 9. 23.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권 포기 (3.0ha)
처분 년월일		2009. 12. 14.
면허번호		포항제 149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복합양식 어업
어업권자	주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죽천리 226번지
	성명	최진
	주민등록번호	610206-*****
어업면허 기간		2009. 12. 14. ~ 2013. 9. 23.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면허 (3.0ha)
처분 년월일		2009. 12. 14.

포항시 공고 제 2009-1282호

수산업법시행령 제30조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 포기 및 어업면허 처분된 어업권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포항시장 박승호



2009년 12월 14일

○ 공고사항

면허번호		포항제 121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어류 등 양식 어업
어업권자	주소	포항시 북구 환호동 489번지 대동빌라 나동308호
	성명	조유남
	주민등록번호	410501-*****
어업면허기간		2006. 11. 3. ~ 2011. 10. 11.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권 포기 (4.0ha)
처분 년 월 일		2009. 12. 14.
면허번호		포항제 150호
어업의 종류 어구의 명칭 및 양식방법		복합양식 어업
어업권자	주소	포항시 북구 환호동 489번지 대동빌라 나동308호
	성명	조유남
	주민등록번호	410501-*****
어업면허 기간		2009. 12. 14. ~ 2011. 10. 11.
어장위치와 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리 지선
처분 내역		어업면허 (4.0ha)
처분 년 월 일		2009. 12. 14.